스마트항만물류지원센터 공고 제2024-03호

2024년도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오디션 및 유니콘테스트 창업기업 모집 통합공고

스마트 해상물류 분야의 창업 생태계 구축과 창업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2024년도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오디션 및 유니콘테스트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 **사업목적**: 스마트 해상물류 분야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창업을 지원하여 실질적 투자 연계 및 매출 창출 기회 마련하고 스마트 항만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함

□ 선정규모: 창업오디션 00개사, 유니콘테스트 10개사 이내

세부 사업명	지원대상	협약기간	지원내용
창업 오디션	대학(원) 재(휴)학생, 대학(원) 졸업한 예비창업자	6개월 ('24. 5. ~ 11월 초)	- 창업지원금 1,000만원 이내 - 창업 교육 및 보육프로그램
유니 콘테스트	스마트 항만물류 분야 창업기업	6개월 ('24. 5. ~ 10월 말)	- 창업지원금 3,000만원 이내(*차등지급) - 창업 교육 및 보육프로그램

□ 공고 기간: '24. 3. 22.(금) ~ 4. 11(목)

□ 신청·접수 기간: <u>'24. 4. 1.(월) ~ 4. 11(목)</u>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하단 공고문 내 이메일 주소 참고)

2024년도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오디션 8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ㅇ 스마트 항만물류 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유도
- o 항만물류 분야 혁신 아이디어 및 기술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지원 및 교육을 통한 스마트 항만 기초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 □ 지원대상: 대학(원) 재(휴)학생, 대학(원) 졸업한 예비창업자
- □ 지원내용: 창업지원금 1,000만원 이내 및 창업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등

창업지원금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창업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해상물류 창업기업 설립 및 아이템 구체화에 필요한 창업 보육 교육 실시

-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24년 5월 중~11월 초 예정)
- □ 선정규모: 예비창업기업 00개사 이내
- □ 모집분야

구분	분류	분야
1	물류 모니터링 지능화	컨테이너 화물 실시간 위치 및 상태 추적
2	작업자 안전	유해 화학물질 가스 누출 감지
3	물류 데이터 고도화	물류 데이터 융복합 플랫폼
4	항만 설비 안전	실시간 항만 시설물 모니터링 및 예지 정비
5	항만 설비 안전	사람-항만-선박 간 통신·교통 관제
6	작업자 안전	항만 안전 loT 개발
7	디지털 트윈	항만 원격조정 훈련 콘텐츠 제작
8	탄소중립을 위한 스마트항만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9	액체 물류 관리	액체 물류 스마트 모니터링 및 통제 기술
10	기타	해양/물류/항만의 적용 가능한 사업 아이템

□ 우수기업 상금 및 상장 수여

구분	상격 및 상금
1위	해양수산부장관상: 1,500,000 원
2위	울산항만공사 사장상: 1,000,000 원
3위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상: 500,000원

^{*} 상기 내용은 평가 결과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및 우대요건

○ 신청자격: 대학(원) 재(휴)학생, 대학(원) 졸업 예비창업자로서 팀 또는 개인

모집 형태	구 성
창업팀	모집 분야 중 택1 하여 예비창업기업으로 자격으로 신청 ※ 발표평가 후 신청한 예비창업기업 단위로 프로젝트 수행
개인	모집 분야 중 택1 하여 개인 자격으로 신청 ※ 발표평가 후 협약 이전까지 팀 구성 또는 개인으로 확정 후 프로젝트 진행

ㅇ 우대요건

- 신청한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창업 관련 공모전 및 경진대회 수상자
- 스마트 해상물류 x ICT 멘토링 참여자 또는 이수자
-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해양수산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입상자
- *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신청 제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울산과학기술원 스마트항만물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금년도 창업지 원사업 간의 중복 지원자
- 기존의 창업오디션 기업 대표자는 새로운 기수 대표로 지원 불가하며 기창업아이텎으로는 지원 불가
-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를 위해 휴학 중인 자

- 동 사업의 지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단, 접수 시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 개인워 크아웃 제도에서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회생계획인가 혹은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제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또는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단,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ㅇ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구분	대상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괄리 및 운영업	91249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사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배제된 자
-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자
- 기타 주관기업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지원내용

-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24년 5월 중 ~ 11월 초 예정)
-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창업 보육 교육 및 멘토링 등
 - 창업지원금: 1,000만원 이내
 - * 선정평가를 통하여 창업지원금은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 창업지원금은 신청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평가 후 지급될 예정
 - *** 부가세 제외

〈창업지워금 비목〉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를 구 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관련 비용(등록은 제외) * 단 출원은 협약기간 내 완료되어야 하고 관련 자료 제출 필요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등)
교육훈련비	참여 연구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인건비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창업 교육: 창업기업 설립을 위한 세무, 노무, 지재권 강의를 포함한 비 즈니스 모델 개발 교육 등
 - 선정된 (예비)창업기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창업 교육 참석 필수
 - 교육은 8회 이상이며 수요조사를 통해 주간 또는 야간에 진행될 예정
- 멘토링: BM 및 기술 멘토 배정 및 멘토링 진행
 - MVP, 시장 조사, 고객인터뷰 등
- ㅇ 우수기업 선발, 상장 및 상금 지급

구분	상격 및 상금
1위	해양수산부장관상: 1,500,000 원
2위	울산항만공사 사장상: 1,000,000 원
3위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상: 500,000원

- * 상기 내용은 평가 결과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창업공간 지원: 울산과학기술원 산학융합캠퍼스, 울산항만공사 창업아지트





- 팀별 회의 및 휴게 가능한 공용공간, 지정 자리 없는 스마트 사무실(복합기 구비)
- 발표평가 준비를 프로젝터 시설 및 개별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 제공
- *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에 한하여 '24년 12월까지 사용 가능
- * 센터에서 진행되는 네트워크 활동(울산항 견학, 네트워킹 간담회, 최종발표 등)에 참가 기업당 최소 1명 이상 참석 필수

4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기준 준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자금 집행 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전용 신용(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창업 준비 자금은 활동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사용계획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 주관기관 승인 이후 집행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선정자가 창업 준비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화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약 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 법인전환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신청·접수

- □ 공고 기간: 2024. 3. 22.(금) ~ 4. 11.(목)
- □ 신청·접수 기간: <u>2024. 4. 1.(월) ~ 4. 11.(목)</u>

< 유의 사항 >

-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2. 신청 완료 후 "나의 신청 현황"을 통하여 접수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 요망
- 3.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o 이메일 접수 (mieun@unist.ac.kr)
 - 증빙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파일명: 창업오디션 8기 신청서류_예비창업기업명)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 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신청·접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인증을 실시하여 함 * 관련 문의사항은 동 공고 [8. 문의처] 참조
- ㅇ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목록 〉

제출 서류	비고
`"E `\"	,—
1. 증빙서류 제출 검토표	
2. 창업여부 확인서	
3. 창업오디션 신청서	
4. 사업계획서	
5. 대표자 신분증 사본	별첨1
6. 참여인력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20'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서	
9. 서약서	
10. 가점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6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절차(안) 〉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선정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Longrightarrow	신청자(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 (10분 내외)	\Rightarrow	선정 확정 및 심의 후 최종 공고
'24년 4월 3주차		'24년 4월 4주차		'24년 4월 말

- * 신청자에 대한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주관기업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서류평가: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자격요건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예비창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이 위배되는 사항이 발 견되는 경우 발표평가 또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u>서류평가</u> <u>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u>
- 가점항목: 특허·지재권 보유자, 정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등에 가점을 부여하며, 신청 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으로 불인정

가점 항목	점수
1)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2) 최근 3년 이내 창업 관련 공모전 및 경진대회 수상자 -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2점	2점
3) 스마트 해상물류 x ICT 멘토링 참가자 또는 이수자 - 2023년도 스마트항만물류 트랙 참여자 또는 이전년도 이수자	2점
4)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해양수산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입상자 - 2022년도 또는 이전년도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입상자	2점

^{*} 가점 항목 합산 최대 6점 이내 반영

- 발표평가: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계획 적정성,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발표평가
 - PPT 5장 내외(발표평가 해당자에 한함) 1부

〈 발표 평가 지표의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사업 참여의지	본 사업의 참여동기, 추진하고 싶은 내용, 필요성 인지
프로그램 이해도	온·오프라인 교육·행사 참여계획 등 사업참여 태도 및 의지 등
창업아이템	아이템(제품/서비스)를 개발 동기, 아이템의 컨셉, 주요고객 및 시장, 타
9 8 4 4 9	제품(서비스)와의 차별성, 아이템의 시장성 등
아이템 구체화	아이템(제품·서비스)를 실현할 핵심기술 및 지재권 보유 여부 및 확보
	계획, 최소요건(MVP), 시제품 제작 등 아이템 검증 계획
및 사업화	본 프로그램 기간동안의 실현가능한 결과물 등
팀구성	창업팀의 구성, 구성원의 역할 및 핵심역량

- 최종선정: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 최종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하여 주관 기업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일정 ※운영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서류평가 및 공고 신청·접수 결과통보 **→** '24.3.22.(금) 4.1.(월) ~ 4.11.(목) ~ '24년 4월 3주차 발표평가 및 협약 OT 결과 통보 **← ←** '24년 5월 중 '24년 5월 초 ~ '24년 4월 4주차 (별도 안내) (별도 안내) 사업수행 수시점검(필요 시) 중간점검 '24년 5월 ~11월 '24년 8월 중 수시 (6개월) T 정산, 결과보고 시상 최종 오디션 및 수료증 교부 ← '24년 11월 중 '24년 11월 중 '24년 11월 초

7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사업비 전액 환수 등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음
-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 금액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
 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 청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평가 전 유의사항

- 전 평가과정에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발표해야 하고, 불참 시 선 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 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스마트 항만 물류 지원센터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제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 지원 중단 또 는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 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 두절(2주 이상) 및 성실성을 문제로 부재 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 지침에 따라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참여 제한 등 제제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사업자 등록 후 은행 계좌 개설 및 동계좌와 연결된 신용(체크) 카드 사용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8 문의처

□ 지원내용, 신청·접수 방법 등 문의 가능

○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스마트 해상물류 창업오디션 담당자: ☎ 052-217-3799

mieun@unist.ac.kr

2024년도 스마트 해상물류 유니콘테스트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스마트 해상물류 분야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창업을

지원하여 실질적 투자 연계 및 매출 창출 기회 마련

□ **지원대상**: 스마트 해상물류 분야 창업기업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자급), 창업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등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창업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BM 고도화, IR피칭덱 설계,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운영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24. 5월 ~ 10월 예정)

□ **선정규모**: 10개사 이내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신청 세부 조건>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경우
- 창업여부 기준표[별첨 1]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신청 제외 대상 : 사업 접수 마감일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조건 예외 대상>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조건 예외 대상>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위와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단, 동일 아이템 및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내 지원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24. 5월 ~ 10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 최대 3천만원 이내(*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부가세 별도)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관련 비용 (※ 협약 기간 내 출원 완료 건만 인정)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등)
교육훈련비	참여연구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창업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비고
창업교육	지식재산권 로드맵 구성, IR 피칭덱 설계, 투자 연계방안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공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운영	
멘 토 링	제품·서비스 기능, 비즈니스 모델 등의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진행	
네트워킹	창업기업의 정보 공유를 위한 울산항 견학, MINI Demo Day, 성과 보고회 진행	

- ※ 상기 프로그램은 유니콘테스트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 창업교육 4회 이상이며, 수요조사를 통해 주간 또는 야간에 진행 될 예정
- 유니콘테스트 우수기업 선발

구분	상격	훈격	시상금	비고
1위	대 상	해양수산부 장관상	5백만원	
2위	우수상	해양수산부 장관상	3백만원	
3위	장려상	울산항만공사 사장상	2백만원	

- ※ 상기 내용은 평가결과 및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창업공간 지원 : 울산 과학기술원 산학융합캠퍼스





- 팀별 회의 및 휴게 가능한 공용공간, 지정 자리 없는 스마트 사무실(복합기 구비)
- 발표평가 준비를 프로젝터 시설 및 개별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 제공

4 신청 및 접수

□ 공고 기간: '24. 3. 22.(금) ~ 4. 11(목)

□ 신청·접수 기간: <u>'24. 4. 1.(월) ~ 4. 11(목)</u>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mjkim822@unist.ac.kr)

※ 한 개의 PDF 파일로 제출(파일제목 : 2024년 유니콘테스트 신청서류_신청기업명)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여부 (○/×)	비고			
	증빙서류 제출검토서	1부	0	양식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양식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1부		-		
공통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1부		-		
	최근 3개년('21~'23년) 재무제표 ※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양식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양식 4		
	과제 참여 동의서	1부		양식 5		
	정부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	1부		양식 6		
기타서류	가점 관련 증빙서류	1부		-		
	기타 참고자료 ※ 사업계획 설명을 위해 필요한 그림 또는 문서 등	1부		-		
	추가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 하여 제출					

5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

□ **평가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검토: 사업계획서를 평가(가·감점포함)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 평가 대상자로 선정

〈서류평가 가점 및 감점 대상〉

구분	대상	점수	비고
가점	· 최근 3년 이내 현금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2점	투자계약서, 입금증 등
	· 최근 3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1점	상장, 상패 등
	·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출원, 등록 등) 보유자	1점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감점	· 최근 3년 이내 유니콘테스트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2점	제출 불필요

※ 가·감점은 서류 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가·감점 증빙서류만 인정

- ③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성장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PPT)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 등에 대해 심층 평가
 -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과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 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성장전략, 대표자 및 팀워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지원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평가항목	세부내용
기업현황	· 최근 3년간 매출 발생 여부, 투자유치 현황(계획) 등
문제인식	· 창업 아이템 개발동기 및 해결방안 등 · 시장 규모 및 특성, 향후 전망 등 구체화 정도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 기술역량보유(지식재산권 등) 기반으로 한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 해당 창업아이템의 성장 가능성
기업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 · 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모집 공고		창업기업 신청·접수		요건 검토 및 선정 평가		
2024. 3. 22. ~ 4. 11.		2024. 4. 1. ~ 4. 11.		4월 3주차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 체결		협약 준비		선정 공지		
5월 2주차		5월 1주차		4월 4주차		
유니콘테스트 진행		사업수행		최종평가		
5월 ~ 10월		5월 ~ 10월		10월 4주차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함
- 사업 신청 마감시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발표평가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발표 및 대응하여야 하고,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 가능
-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지원사업비 환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또는 동 사업의 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 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동 사업의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금 집행 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전용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환수 시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음
- 협약 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창업 지원금 사용실적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7 문의 처

□ 사업 신청 문의

당 장 :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스마트 항만물류 지원센터 유니콘테스트 담당자

○ 문 의 처 : ☎ 052-217-2797

<u>mjkim822@unist.ac.kr</u>

[별첨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창업(여부		
개인기업	타인으로부터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아님
	상속/증여	이종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창업(아님	
		이종창업	-	창	업
	기조 게이시어다	기존 개인사업 자 폐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 "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 창업자 지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법인기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아님 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창	업
	자회사 여부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법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장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
	4,104,50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1. 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 이업종의 개인자업자를 설립"한 경우"창업"으로 판단
- 2. 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